

「강남구 종합사회복지관」 운영 재위탁 동의안

심사보고서

2024. 10. 14.

복지문화위원회

의안 번호	397
----------	-----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4. 8. 23. 강남구청장(복지정책과)

나. 상정의결

- 제322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복지문화위원회 제1차 회의(2024. 10. 14.)

“원안가결”

2. 제안설명 요지(복지생활국장 : 오선미)

가. 제안이유

- 관내 종합사회복지관 2개소 운영법인과의 협약기간 만료 (2024. 12. 31. 字)에 따라, 강남종합사회복지관, 대청종합사회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 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재위탁하고자 함.
- 이에 공개모집을 통한 재위탁 추진을 위하여 「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5조(승인 및 동의)에 따라 강남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위탁사무명 : 강남구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(강남종합사회복지관, 대청종합사회복지관)

- 민간위탁 필요성
 - 복지관 운영의 전문성의 요구
종합사회복지관은 지역 주민의 특성과 복잡하고 다양한 욕구를 파악하여 대응하고, 민(民)·관(官) 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노인·장애인 등 저소득 취약 가구에 복지 자원 및 서비스를 지원하는 지역사회 복지실천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전문성과 풍부한 현장경험을 갖춘 전문기관의 위탁운영이 적합함.
 - 운영·관리상의 효율성 제고
직영보다 민간위탁을 통한 운영이 인력·예산 측면에서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하며, 사업수혜자 특성, 서비스 제공 내용에 따른 목표 설정과 객관적인 실적 평가 및 지도·점검을 통해 효율성 제고가 가능함.

- 위탁 대상 사무 등 위탁 범위
 -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및 관리 일체
 - 종합사회복지관 3대 기능(사례관리, 서비스제공, 지역조직화) 사업
 - 기타 지역사회의 특성과 지역주민의 복지욕구를 고려한 사업 및 기타 사회복지증진을 위하여 구와 협의하여 정하는 사업 등

- 민간위탁 기간 : 5년 (2025. 1. 1. ~ 2029. 12. 31.)
 - 근거 :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

- 수탁자 선정방식 : 공개모집 후 민간위탁심의를 통한 적격 수탁기간 선정
-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
 - 총 소요예산 : 14,035,192천원 (5년, 2025년~2029년)
 - 시비 13,670,500천원/구비 364,692천원(2025년 기준 매년 5% 증가율 반영)

(단위: 천원)

기관명	합 계	인건비	운영비	사업비	비고 (구비사업)
합계	14,035,192	11,882,494	1,298,435	854,263	‘25~’ 29
강남종합 사회복지관	7,096,673	6,062,413	738,086	296,174	특화사업
2025년 (기준)	1,284,319	1,097,144	133,575	53,600	
대청종합 사회복지관	6,938,519	5,820,081	560,349	558,089	목욕탕운영 특화사업
2025년 (기준)	1,255,697	1,053,288	101,409	101,000	

-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 결과 : 적정

다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
 -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
 -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
 -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
 -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

3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: 이미영)

- 「사회복지사업법」상의 명시적인 근거에 따라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은 민간위탁이 가능하며, 재위탁 여부는 종합사회복지관의 기능과 운영의 전문성, 효율성, 그동안의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임.

- 한편, 기존 운영법인과의 위탁계약기간이 2024. 12. 31.자로 만료될 예정
이므로 본 동의안이 가결된다면 수탁자 모집공고, 계약 심사 및 체결까지
의 소요 기간 등을 면밀히 살펴 신속히 수탁자를 선정함으로써 복지서비
스 제공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임.
- 또한, 최근 3년간 민간위탁 사무감사 결과¹⁾ 민간위탁 업무 전반에 걸쳐
상당한 지적이 있었는바, 민간위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위해 수탁기관에
대한 사업 이행 실태, 인사 및 회계 분야 등에 관한 철저한 관리·감독과
함께 민간이 보유한 전문성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해야
할 것으로 보임.

4. 질의 및 답변 요지 : “없음”

5. 토론 요지 : “없음”

6. 심사결과 : “원안가결”

7. 소수의견의 요지 : “없음”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“없음”

붙임 「강남구 종합사회복지관」 운영 재위탁 동의안. 끝.

1) 2024년 민간위탁 사무감사 결과 일부 발췌(출처: 강남구청 홈페이지)

- 민간위탁 사무감사 결과 협약 체결 후 사업자에게 전임하는 업무 담당자 해태, 협약은 양 당사자에게 권리·의무를 발생토록 하는 법률행위임에도 협약의중요성에 대한 인지 부재와 협약내용 미숙지로, 전례를 답습하는 관행 등에게 인하여, 업무 전반에 걸쳐 다양한 지적사항이 확인됨
- 또한 업무처리 단계별로 사업수행, 회계관리 등 위탁사무의 이행 단계와 주관부서의 관리·감독 단계에서 부적정 처리비율이 높은 경향을 보여 위탁사무별로 구체적이고 명확한 업무 처리기준 마련 및 주관부서 담당자의 직무교육 등이 요구됨

「강남구 종합사회복지관」 운영 재위탁 동의안

의안 번호	397
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: 2024. 8. 23.

제출자: 강남구청장

제출부서: 복지정책과

1. 제안이유

- 가. 관내 종합사회복지관 2개소 운영법인과의 협약기간 만료 (2024. 12. 31.字)에 따라, 강남종합사회복지관, 대청종합사회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 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재위탁하고자 함.
- 나. 이에 공개모집을 통한 재위탁 추진을 위하여 「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5조(승인 및 동의)에 따라 강남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위탁사무명 : 강남구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(강남종합사회복지관, 대청종합사회복지관)

나.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필요성

○ 추진 근거

-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(사회복지시설의 설치)
-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 2(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)
-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(관리·운영의 위탁)
-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(승인 및 동의)

○ 민간위탁 지속 필요성

- 복지관 운영의 전문성의 요구

종합사회복지관은 지역 주민의 특성과 복잡하고 다양한 욕구를 파악하여 대응하고, 민(民)·관(官) 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노인·장애인 등 저소득 취약 가구에 복지 자원 및 서비스를 지원하는 지역사회 복지실천의 중추적인

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전문성과 풍부한 현장경험을 갖춘 전문기관의 위탁 운영이 적합함.

- 운영·관리상의 효율성 제고

직영보다 민간위탁을 통한 운영이 인력·예산 측면에서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하며, 사업수혜자 특성, 서비스 제공 내용에 따른 목표 설정과 객관적인 실적 평가 및 지도·점검을 통해 효율성 제고가 가능함.

다. 위탁 대상 사무 등 위탁 범위

-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및 관리 일체
- 종합사회복지관 3대 기능(사례관리, 서비스제공, 지역조직화) 사업
- 기타 지역사회의 특성과 지역주민의 복지욕구를 고려한 사업 및 기타 사회복지증진을 위하여 구와 협의하여 정하는 사업 등

라. 위탁시설 개요

시설명	소재지	규모	지원시설
강남종합사회복지관	개포로109길 5	지하1층, 지상3층 (2,168.19㎡)	프로그램실, 강당, 키움센터, 상담실, 식당, 북카페, 사무실
대청종합사회복지관	양재대로 55길 10	지하1층, 지상3층 (1,545.66㎡)	프로그램실, 강당, 목욕탕, 경로식당, 건강증진센터, 프로그램실, 사무실

○ 위 치 도

[강남종합사회복지관]



지역여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개포3동은 영구임대아파트(대치1단지_1,623세대)가 위치. - 지역 내 재건축으로 저소득층, 중산층, 고소득층이 혼재된 지역특성을 보이고 있음. - 개포3동 지역 노인인구 비율(41.7%)과 1인가구 비율(42.0%)이 매우 높음. - 수서경찰서, 강남우체국, 양재천, 대모산, 전철역, 공원 등 각종 편의시설이 위치하고 있어 거주하기 편리하고 만족도가 좋은 지역임.
-------------	---

[대청종합사회복지관]





대청종합사회복지관 전경



감당



2층 프로그램실

지역여건

- 일원1동은 대부분 주거지역으로 임대+분양 혼합단지과 일반주택 구역으로 구분 혼합 임대아파트 2,934세대 중 임대아파트 2,214세대
- 일원1동 65세 이상 노인인구 25.2% 초고령화 (독거 노인세대 중 저소득 독거어르신 71.8% 차지)
- 인근 주민 기피시설 위치 : 강남자원회수시설, 한국지역난방공사, 탄천물재생센터

마. 민간위탁 기간 : 5년 (2025. 1. 1. ~ 2029. 12. 31.)

- 근거 :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

바. 수탁자 선정방식 : 공개모집 후 민간위탁심의를 통한 적격 수탁기간 선정

사.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

○ 총 소요예산 : 14,035,192천원 (5년, 2025년~2029년)

- 시비 13,670,500천원 / 구비 364,692천원 (2025년 기준 매년 5% 증가율 반영)

(단위: 천원)

기관명	합 계	인건비	운영비	사업비	비고 (구비사업)
합계	14,035,192	11,882,494	1,298,435	854,263	'25~'29
강남종합 사회복지관	7,096,673	6,062,413	738,086	296,174	특화사업
2025년 (기준)	1,284,319	1,097,144	133,575	53,600	
대청종합 사회복지관	6,938,519	5,820,081	560,349	558,089	목욕탕운영 특화사업
2025년 (기준)	1,255,697	1,053,288	101,409	101,000	

○ 산출내역

[강남종합사회복지관]

구		분	금 액	구성비(%)	산 출 근 거	
지 출 원 가	① 인 건 비	기 본 급	744,720,840	57.98	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	
		제 수 당	연장근무수당	50,632,440		3.94
			관리자수당	2,400,000		0.18
			가족수당	15,600,000		1.21
			정액급식비	27,360,000		2.13
			명절휴가비	74,353,200		5.79
	노 무 비	기타후생경비	6,900,000	0.53		
		보 험 료	퇴직적립금	76,255,692		5.94
			국민건강보험료	31,469,260		2.46
			국민연금보험료	41,936,785		3.27
			고용보험료	14,989,550		1.17
	산재보험료		8,387,357	0.66		
	장기요양보험	2,139,137	0.17			
			소 계	1,097,144,261	85.43	
	② 운 영 비 ~ 경 비	여비		2,000,000	0.15	
수용비 및 수수료		29,302,000	2.28			
공공요금		25,826,000	2.01			
제세공과금		11,220,000	0.87			
차량비		5,257,000	0.42			
연료비		12,000,000	0.94			
교육비		11,600,000	0.90			
기 타 경 비		36,370,000	2.83			
		소 계	133,575,000	10.4		
③ 사 업 비		53,600,000	4.17			
지출원가 합계(A=①+②+③)			1,284,319,261	100		
수 입 원 가	④ 입장료 · 이용료		0	0		
	⑤ 사용료		0	0		
	⑥ 사업수입		167,098,000	100	사회교육, 장애아동 재활치료 강사료 및 운영비로 수입금의 82% 집행	
수입원가 합계(B=④+⑤+⑥)			167,098,000	100		
위탁비용(A-B)			1,117,221,261			

[대청종합사회복지관]

구		분	금 액	구성비(%)	산 출 근 거	
지출원가	① 인건비	기본급	718,006,000	57.16	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	
		제수당	연장근무수당	48,709,000		3.88
			관리자수당	2,400,000		0.19
			가족수당	8,400,000		0.67
			정액급식비	27,360,000		2.18
			명절휴가비	71,673,600		5.71
	기타후생경비	16,400,000	1.31	-		
	노무비	퇴직적립금	73,045,717	5.82	-	
		보험료	국민건강보험료	30,103,700	2.40	-
			국민연금보험료	38,213,400	3.05	-
			고용보험료	6,165,100	0.49	-
			산재보험료	8,913,900	0.71	-
			장기요양보험	3,898,400	0.31	-
	소 계		1,053,288,817	83.88		
	② 운영비	여비(국내/국외)	1,000,000	0.08	-	
		수용비 및 수수료	29,549,000	2.36	-	
		공공요금	15,000,000	1.19	-	
차량비		5,520,000	0.44	-		
제세공과금		12,825,000	1.02	-		
기타운영비		37,515,000	2.99	-		
소 계		101,409,000	8.08			
③ 사업비		101,000,000	8.04	-		
지출원가 합계(A=①+②+③)			1,255,697,817	100		
수입원가	④ 입장료·이용료	0		-		
	⑤ 사용료	0		-		
	⑥ 사업수입	14,400,000	100	-		
수입원가 합계(B=④+⑤+⑥)			14,400,000	100		
위탁비용(A-B)			1,241,297,817			

아.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 결과 : 적정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○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(사회복지시설의 설치)

제34조(사회복지시설의 설치)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(이하 “시설”이라 한다)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⑤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.

⑥ 제5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기준·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
○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(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)

제21조(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) ①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따라 수탁하는 법인(이하 “수탁자”라 한다)을 선정해야 한다. 다만,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한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하지 않을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해당 시설을 설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(이하 “위탁기관”이라 한다)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(이하 “선정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, 공신력, 사업수행능력, 지역간 균형분포 및 제27조의2에 따른 평가결과(평가를 한 경우에만 해당한다)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, 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
○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(관리·운영의 위탁)

제5조(관리·운영의 위탁) ① 구청장은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시설의 관리·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관리·운영을 위탁하는데 필요한 기준 및 방법 등은 「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」 제21조 및 제21조의2에 따르되,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「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다.

③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「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9조에 따른 민간위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에 한정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.

④ 구청장은 사회복지시설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의(이하 “의회”라 한다)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. 다만,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.

○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(승인 및 동의)

제5조(의회동의 및 보고)

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는 그 사무를 위임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, 자치사무는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
나. 서울시 소재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방식

구 분	소유주	계	운영방식		
			직영	민간위탁	법인운영
합 계		99	-	85	14
서울시	市	1		1	-
자치구	합 계	98		84	14
	구	54		54	
	법인	14		-	14
	SH·LH	30		30	

다. 민간위탁금 재원

시 비	인건비 기본인력(19명) 지원	운영비 시설 규모별 5등급 차등지원
구 비	특화사업비, 목욕탕운영비(대청)	

작성자 : 복지정책과 복지정책팀 사회복지7급 정란정(☎ 02-3423-5789)